

## 2. 새기술(실용화 기술)보급 시범사업 추진

### 가. 목 적

-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
- 새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

### 나. 추진방향

- 단편기술 중심에서 패키지화된 종합기술시범 사업으로 확대 추진
-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
-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
-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축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
-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개발보급 및 소득화로 삶의 질 향상
- 단계별 연시회,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

### 다. 근거법령

- 농촌진흥법 제4조5항(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보급)
- 농촌진흥법 제13조1항(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보조)
-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

### 라. 사업 추진요령

(1) 사업추진 주관기관 : 시군농업기술센터

(2)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
-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
-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, 기계장비,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
- 새기술(실용화기술)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

- 사업에 따라 인근농가와 대비하여 소득분석 실시
- 인근농가의 기준 : 동일지역내 동일작목, 유사규모, 유사작기 농가 중 해당 시범요인을 수용하지 않은 농가의 소득
-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
  - 시군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을 변경 승인하고
  -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
  - ※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

### (3) 대상자 선정

- 선정기준
  -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
  - 기술 낙후지역으로 새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
  -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
- 선정절차
  - 대상농가 중에서 영농규모,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사업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
  - \* 사업특성상 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
  -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

### (4) 사업비 지원방법

- 사업비지원은 진도에 따라 지급 (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후 지급할 수 있다)
-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보조금 집행(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제 4조)
- 지원단가 및 금액 한도내에서 사업 추진(자부담 추가 가능)

### (5)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

-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

## (6) 기술 수용율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

- 시범사업 대상농가의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새기술 수용율 조사
  - 평가기관 : 사업담당부서
  - 주요평가지표 : 기술수준 향상율, 농가 소득증대율, 노동력 절감율 등
  - 성과측정(11월~익년도 1월) :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
- 시범사업 추진실태, 기술지도 서비스,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이메일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

## (7) 사후관리

-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, 전·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

## (8) 시범사업장 현장교육장으로 활용

- 시범사업 내용 기재 표찰 수립(붙임)

<붙임>

## 시범사업 표찰(안)

<b>(예시) 딸기 로열티대비 우량묘 생산시범</b>
본 시범사업은 로열티 대응 딸기 우량묘 생산으로 국내 딸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00도농업기술원, 00시(군)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○ 대표(참여농가수) : 홍길동(1농가) ○ 사업규모 : 0.2ha ○ 사업비 : 20,000천원(국비 50%, 시군비 50%) ※ 도비사업은 도비40% 시군비40%, 자부담20%로 표시 ○ 시범요인 - 딸기 국내산 우량모주 생산 - 딸기 베드육묘시설 설치 - 국내산 딸기 우량묘 공중 채묘시설 등 ※ 담당자 : ○○○지도사(전화번호 : 000-000-0000)
 농촌진흥청,  경기도농업기술원, 시군마크 0시(군)농업기술센터

주)

- 1) 표찰규격은 사업장별로 적정크기로 제작 설치
- 2) 국비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
- 3) 도비사업은 도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
- 4) 제목, 국도비사업 협력사업,사업내용,기관명의 바탕색은 다르게 하되 바탕색, 글자색, 글자 크기 등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
- 5) 표찰은 사업추진과 동시에 수립하여 인근농가들에게 홍보하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